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6. 4. .

교육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4월 9일

· 회부일자 : 1996년 4월 9일

다. 상정일자 : 1996년 4월 20일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보시환경국장 조 규 린)

토양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시행에 따라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과 소관사무 일부를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만)

토양환경보전법(법률 제4906호 '95. 1. 5),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148485호 '95. 12. 2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6호 '96. 1. 4)

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권한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을 높이고 행정 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관리과소관 사무에 있어서 조례안 별표 1중 소관 제19호 내지 32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환경관리과소관 사무를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타당 하다고 사료되나, 위임사무에 대한 수임능력이 고려되어야 할 것 임.

4. 질 의 및 답 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경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개 정 조 례 안 : 별 첨